

# 현장체험학습여행공제 안내문

## 1 상품소개

수학여행, 소풍, 수련활동, 현장체험 등 교외활동 중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및 휴대품 파손, 타인에게 끼친 법률적인 배상책임 손해 등을 보상합니다.

구분	내용
가입대상	본회에 입회한 “유아교육법 제2조, 초·중등교육법 제2조”에 따른 교육기관의 학생, 교직원, 교육활동 참여자
활동 유형	숙박형 체험활동, 1일형 현장체험학습 등 교외체험활동

※ 각종 체육 관련 활동은 [체육교육활동안전공제](#)로 가입

## 2 상품특징

- 본 공제상품은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공제 상품으로 사고 발생 시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 전담
- 간편한 공제가입 신청으로 인한 교직원 업무 절감
- 만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3천만원 사망 위로금 지원 (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사고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음)
- 대중교통 이용중 부상 치료비, 상해·질병 수술비, 특정전염병위로금 등 다양한 담보 정액 보상

## 3

## 보장내용

보장사항	보장한도	비고
상해 사망후유장해	1억원 한도	
질병사망 및 질병 80%이상 고도후유장해	3천만원 한도	
현장체험학습여행 중 배상책임	1천만원	- 자기부담금 1만원
현장체험학습여행 중 휴대품손해	50만원 (1점당 최대 20만원)	- 분실제외 - 최대 3점 - 자기부담금 1만원
대중교통이용중부상(등급별) 치료비	5~400만원 한도	- 약관상 부상등급표에 따른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
상해질병 수술비	30만원	
특정전염병위로금	30만원	
상해질병입원비용(3일 이상)	10~50만원 한도	
식중독입원비용(2일 이상)	20만원	
만15세 미만 사망위로금 지원	최대 3천만원	지급결정 및 지급액은 본회 이사회 심의를 통해 결정

※의료비의 경우 **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역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**

## 4

## 가입시 주의사항

- 가입신청 및 공제료 납입기한은 여행 출발일 전일까지이며, 부득이하게 출발 당일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 입금 시각 이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- 현장체험학습여행공제는 출발 일시부터 도착 일시까지 보장되며, 아래 기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  - 출발 일시 : 여행을 위해 집에서 출발하는 일시
  - 도착 일시 : 여행을 끝내고 집에 도착하는 일시
- 현장체험학습여행공제는 현장체험 교육활동기간(공제기간) 중 직접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현재 치료 중이거나 공제기간 이전 과거상병(기왕증)을 원인으로 발생한 병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불가합니다.
- 본 상품은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으며, 활동 중 발생한 의료비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지역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 청구하셔야 합니다.
- 생존 수영 및 각종 체육관련 교육활동은 “체육교육활동안전공제”로 가입하여야만 보상 가능합니다.
- 본 상품은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한 현장실습의 경우에는 보상 불가합니다.